

- 이 추록은 『2025 퍼펙트 세법학 I』 제16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- 이 추록은 출간 이후 세법개정사항 및 그 밖의 수정·보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.

## I. 정오사항

면	행	증전의 내용	고칠 내용
2-56	상 2	「개별소비세법」에	「개별소비세법」 <b>과세대상</b> 에

## II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(2025.5.7.개정)으로 인하여 “특정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”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체

◆ **1쇄** p.4-97 상 4~8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④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
-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)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**2쇄** p.4-97 상 5~7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⑤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. 다만, 해당 법인이 해산(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) 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◆ **1쇄** p.4-97 상 14~20행 / **2쇄** p.4-97 상 13~20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해 주세요.

- ①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및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

$$\left[ 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이 일정한} \\ \text{거래로 얻은} \\ \text{이익}^{*1} \end{array} - \left( 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의} \\ \text{산출세액}^{*2} \end{array} - \begin{array}{l} \text{공제} \\ \text{· 감면액} \end{array} \right) \times \frac{\text{특정법인이 일정한 거래로 얻는} \\ \text{이익}^{*3}}{\text{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의} \\ \text{소득금액}} \right] \times \begin{array}{l} \text{특정법인의} \\ \text{지배주주} \\ \text{등이 직접} \\ \text{또는} \\ \text{간접으로} \\ \text{보유하는} \\ \text{주식보유비율} \end{array}$$

\*1 (㉠)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·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: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·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
(㉡)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: 예시적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

\*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

\*3 분모 분의 분자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.